

□ 사건의 경과

사 건 번 호	2005가단17898
원 고	○○화재보험 주식회사
피 고	양○○
소 제기일	2005. 2. 25.
판결 선고일	2005. 12. 20.
쟁 점	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기차량손해에 있어서 음주 면책조항에의 해당 여부
결과 (주문)	<input type="checkbox"/> 원고 승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원고 패소 <input type="checkbox"/> 원고 일부 승소
참 고 조 문	도로교통법(2005. 5. 31.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1조 제1항, 제4항

□ 판결 요지

○ 사안의 개요

피고는 2005. 2. 3. 00:20경 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불상의 이유로 그 진행방향 우측의 가로수를 충격한 뒤 논으로 추락하여 위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뒤 위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.

○ 원고의 주장

피고는 사고 전인 2005. 2. 2. 19:00부터 같은 날 23:50경까지 甲과 함께 맥주 7병(병당 500ml)을 나눠 마셨으므로 피고가 마신 맥주의 양은 1,750 ml(피고와 甲이 1/2씩 나눠 마셨음을 전제로 할 때)가 되고, 사고는 그로부터 약 30분 뒤에 발생하였으므로,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면, 결국 피고는 0.1645%의 음주만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유발한 셈이어서, 원고는 면책약관에 따라 위 차량 파손으로 인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의 지급을 면한다.

○ 쟁점

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기차량손해에 있어서 음주면책조항에의 해당 여부

○ 법원의 판단

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에 의하면,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자기차량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, 음주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, 즉 혈중알콜농도 0.05%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, 사고 당시 음주측정기 등을 이용한 별도의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직전 마신 술의 양 등을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,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피고가 사고 직전 甲 외 1명과 함께 식당에서 맥주를 일부 나누어 마신 사실 외에 그 마신 양이 얼마나 되는지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, 위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의 지급을 면하기 어렵다.

□ 판결의 의미

- 보험자(보험회사)가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의 지급을 면하려면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.05%의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음주측정기 등을 이용한 음주측정에 의하여 밝혀져야 하고, 부득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보험자가 사고 직전 마신 술의 양 등을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하게 되었다면 우선 그에 관한 전제조건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함을 밝힌 사례.